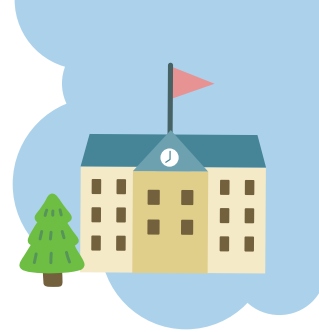




#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법 적용 시점 안내



## 개정 사항 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별표2)

###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<sup>1)</sup>·프탈레이트류<sup>2)</sup> 항목 강화·신설 ('21.7.6. 개정)

- ① (납 강화 기준) (기준) 0.06퍼센트(600mg/kg) 이하 → (변경) 90mg/kg 이하
- ② (프탈레이트류 신설 기준)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.1퍼센트 이하일 것

항 목	대 상	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제2호 가목	도로 또는 마감재료	2) 납은 질량분율로 0.06퍼센트 이하일 것	2) 납은 함량으로 90mg/kg 이하일 것	기본검사 결과, 측정값이 기준의 70%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실시
	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 (표면재료)	<신 설>	3)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* 총함량이 0.1퍼센트 이하일 것	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(시료채취) 실시
제5호 다목	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	<신 설>	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* 총함량이 0.1퍼센트 이하일 것	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(시료채취) 실시

\* 프탈레이트류 7종 : DEHP, DBP, BBP, DINP, DIDP, DnOP, DIBP

## 적용 시점 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부칙 제31875호, '21.7.6.)

구 분	환경안전관리제도	
	확인검사	지도·점검
'22.4.7. 이전 설치된 시설	'22.4.7. 이후 증축·수선* 시 적용	'26.1.1. 이후 적용
'22.4.7. 이후 설치된 시설	'22.4.7. 이후 신축 또는 증축·수선* 시 적용	'22.4.7. 이후 적용

\*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연면적 33m<sup>2</sup> 이상 증축하거나 70m<sup>2</sup> 이상 수선한 경우

### 협조 요청 사항

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,  
관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정 사항, 적용 시점 등  
관련 내용 적극 전파 요청



환경부



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